

# 가스 안전관리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과학기술원(이하 “본원” 이라 한다) 실험실 및 작업장(이하 “실험실” 이라 한다)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지침은 본원 각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가스시설(액화질소저장탱크, 도시가스 제외) 및 본원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본원 입주업체도 이 지침을 적용하며 시설의 임대 및 용역계약서 작성 시 본 규정의 준수를 명시하여야 한다.

제3조(정의) ① “실험실” 이라 함은 가스 및 화학약품, 기계기구, 실험장비 등을 사용하여 강의, 연구, 작업, 실험 등이 행해지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.

② “가스” 라 함은 본원에서 실험·연구용, 초자가공용, 용접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.

③ “가스시설” 이라 함은 가스용기, 압력계이지, 배관 등은 물론 가스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실험장비를 포함하여 말한다.

④ “안전관리자” 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법(이하 “관계법령” 이라 한다)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행정·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안전준수) ①본원 모든 구성원은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적절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권고 및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②각 학과 및 부서의 장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배려, 조치하여야 한다.

제5조(안전관리자) ①본원은 가스에 대한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둔다.

②가스시설별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, 임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안전관리자는 각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.

제6조(실험담당교수) ①실험실 담당교수 및 소속 부서장(이하 “실험담당교수” 라 한다)은 해당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.

②실험담당교수는 해당 실험실에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 및 사용요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실험담당교수는 소속 구성원이 졸업, 퇴직, 휴학 등의 사유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당사자가 사용하던 가스시설에 대하여 반납 또는 불용처리 등의 적

정 조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험실 가스안전담당자) ①실험담당교수는 소속 직원 또는 학생을 가스안전담당자로 선임하고 이를 안전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가스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 1회 이상 실험실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
2. 가스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
3. 가스시설 시공 시 안전담당부서에 사전 통보 및 협의
4. 기타 실험실내 가스관련 점검, 교육 등 기록 보존

제8조(사용자의 의무) ①가스사용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.

②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험담당교수 또는 안전담당자로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, 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시설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졸업, 퇴직, 휴학 등으로 본원을 이직할 때에는 본인의 사용하던 가스시설에 대하여 반납 또는 불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9조(안전점검) ①가스사용자 및 안전담당자, 안전관리자는 별표 1 안전점검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한다.

②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가스시설의 시공) 가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주관부서와 협의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가스용기 검수) ①실험실에서 가스용기를 반입·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학과안전위원회 간사(이하 “안전간사”라 한다)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.

②안전간사는 검수현황을 검수대장에 기록유지하며, 매월 초 전 월의 검수현황을 안전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일과시간외 가스사용) 가스를 일과시간 후에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험담당교수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, 실험담당교수는 가스안전수칙, 응급상황 시 조치요령 등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실험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.

제13조(안전관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) 안전관리자는 실험담당교수, 안전담당자, 가스사용자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수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타법령과의 관계) 이 지침 이외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

의한다.

제15조(기타) 점검 및 교육관련 서류는 1년, 검수현황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